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9. 6.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8월 2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0회(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2년 9월 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구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함 (안 제2조)
- 2)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광고물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써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 위원회 운영 등(안 제5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법령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시조례 포함)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4)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안 제8조 내지 제9조)
- 5)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4에 의하고,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안 제11조)
- 6) 영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세부기준은 별표5 내지 별표6에 의하며,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7)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또는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홍수)

동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주요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안 제2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허가사항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안 제5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안 제6조), 각종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안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안 제12, 13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그동안 법령 및 주민들의 질서의식 미비로 불법광고물 등이 양산되었고, 이에 따른 단속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도 많았지만 이를 제도권 내로 수렴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도시가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